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6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16. (수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4380)	담 당 자	강환일 사무관(044-203-4389)

산업부,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

- 전국 대형마트, 상점가, 관광특구,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설명절을 앞두고 **서민물가안정** 및 **건전한 유통질서 확립**을 위해 **1.17.(목) ~ 25.(금)**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**합동 점검반**을 구성해,

○ **대형마트,** 상점가·관광특구·전통시장 내 **매장면적 33㎡ 이상**의 **소매점포*** 등을 대상으로 **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**에 나선다고 1.17. 밝혔다.

* 특별시, 광역시는 매장면적 17㎡ 이상 소매점포 대상

-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지방자치단체,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.

□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, 생필품,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**판매가격표시**, **단위가격표시**, **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**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.

* 판매가격표시 :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
* 단위가격표시 : 상품의 단위당(g, ㎖) 가격의 표시
*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: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

○ 특히, 농·축·수산물 등 **물가상승 우려**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**민원소지가 높은 점포**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점검은 최근 **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** 감안하여 '**처벌**' 보다는 '**지도**' 및 '**홍보***'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,

*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,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

○ 지도·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**추가로 점검**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**과태료*** 를 부과한다.

* 과태료(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) : (가격 허위표시, 未표시) 1차 시정권고~5차 이상(10백만원), (표시방법 위반) 1차 시정권고~5차 이상(5백만원), (권소가 표시위반) 1차(5백만원)~2차 이상(10백만원) 등

□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"**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**"라고 밝히며,

○ "점검기간 중 상인, 소비자 등과 **현장소통을 강화**하여 **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**되도록 노력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**지자체**에서는 **지난 1.7.~2.1.**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**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**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**정확한 가격 확인**을 통해 **합리적으로 구매**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「**물가안정에 관한 법률**」과 「**소비자기본법**」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.

【붙 임】 1. '19년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계획 1부.
2.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1부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강환일 사무관(☎044-203-43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'19년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계획(안)**

◈ **물가안정에 관한 법률** 및 **가격표시제 실시요령**(산업부고시)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태에 대해 점검

◈ **지자체**에서 실태점검을 추진하되, 필요 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**합동점검** 실시

□ 목 적

○ 설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**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서민 물가안정 도모하고, 유통거래질서 확립**을 위해 공산품(농·축·수산물 등을 포함) **가격표시제 이행실태**에 대한 **지도·점검** 실시

< 가격표시제 개요>

○ **(도입 목적)**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

○ **(법적 근거)**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(기재부), 「소비자기본법」(공정위)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"가격표시제 실시요령" 운영중

* 가격표시제 고시 운영 부처: 석유/액화석유가스/공산품(산업부), 화장품(식약처), 배합사료/농기계/종자가격(농림부), 의약품/의약외품(복지부) 등

○ **(점검체계)** 가격표시 **지도·점검***은 **시·도지사에 위임**, 정기·수시 점검 후 산업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

*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는 시정권고, 2차 이후 과태료 부과(최대 1천만원)

○ **(종류)**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 :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
② 단위가격 표시의무 : 상품의 단위당(g, ㎖) 가격의 표시
③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: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금지

구분	근거	최초 도입시기	표시대상	대상점포
판매가격 표시	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	'73.5.24 ('73.6.1 시행)	백화점, 수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모든 품목	• 33㎡(대도시 17㎡) 이상 소매점포 • 대규모점포(전통시장 제외) 내 모든 점포 • 시·도지사 지정 소매점포
단위가격 표시*		'99.6.25 ('00.1.1 시행)	가공식품(62), 일용잡화(19), 중량표기된 농수축산물(3) 등 84개 품목	• 대규모점포(전통시장 제외) 내 모든 점포 • 준대규모점포(대기업과 대규모점포 경영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·가맹 슈퍼마켓)
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	소비자기본법 제12조	'99.6.25 ('00.1.1 시행)	가전제품(10), 의류(23), 기타(14) 등 47개 품목	• 권소가 표시 금지 제품 판매 모든 소매점포

□ 추진방안

○ **(점검기간) '19.1.7 ~ 2.1** (4주간)

○ **(점검대상) 상점가·관광특구·전통시장** 내 165㎡ 미만 소매점포, **골목슈퍼**(시·군·구별 **6곳 이상**), **대규모점포,** 편의점, SSM(시·군·구별 **3곳 이상**)

○ **(점검방식) 지자체 자체점검**(시·군·구) 및 관계기관 특별 **합동점검*** 병행 실시

* (기간) 1.17 ~ 25, (참여) 산업부, 중기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지자체, 소비자원

○ **(점검내용) 물가 상승** 우려가 높은 **품목** 및 가격표시 관련 **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** 대상 집중 점검

- **설 제수품목**(과일, 생선 등), **생필품**(쌀, 두부, 우유 등) 가격표시
- **상점가**(완구, 악기, 운동용품 등), **전통시장**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

* 가격표시대상 매장면적 : (특별시·광역시) 17㎡, (기타) 33㎡

-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**관광특구**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
- **농약 및 비료판매점** 가격표시

*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

- **대규모점포** 가격표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

□ 점검결과 조치계획

○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**지도 및 홍보**에 중점

- 다만, 위반 소매점 대상 **추가 점검** 및 **과태료** 등 행정조치

* (**가격 허위표시, 未표시**) 1차 시정권고~5차 이상(10백만원), (**표시방법 위반**) 1차 시정권고~5차 이상(5백만원), (**권소가 표시위반**) 1차(5백만원)~2차 이상(10백만원) 등

○ 점검기간('19.1.7~2.1) 중 상인, 소비자 등과 **현장소통**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 **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적극 발굴**